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7.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및 계급	선발예정인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9급	80명	75명	3명	2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선택):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中 2과목(선택)
	전산9급	2명	2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필수):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9급	3명	3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선택):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中 2과목(선택)
	보건9급	2명	2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필수):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9급	2명	2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필수):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설(건축)9급	4명	4명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필수):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9급【일반모집】	4명	4명				1차(필수): 물리 2차(필수):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전기)9급【특성화고】	1명	1명				1차(필수): 물리 2차(필수):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건축)9급【특성화고】	1명	1명				1차(필수): 물리 2차(필수):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관리9급	30명	24명			6명	1차(필수): 한국사 2차(필수): 사회
	조리9급	10명	8명			2명	1차(필수): 사회 2차(필수): 위생관계법규
	운전9급	20명	16명			4명	1차(필수): 사회 2차(필수):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합 계		159	142	3	2	12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나. **교육행정**과 **사서**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붙임2】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시 험 명	직렬(직류)·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9급, 전산9급, 사서9급, 보건9급, 식품위생9급, 시설(건축)9급	5과목	100분 (10:00~11:40)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9급【일반모집】, 공업(일반전기)9급【특성화고】, 시설(건축)9급【특성화고】	3과목	60분 (10:00~11:00)
	시설관리9급, 조리9급, 운전9급	2과목	40분 (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렬(직류)·계급	응시연령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전 직렬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공업(일반전기)9급【특성화고】·시설(건축)9급【특성화고】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2017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2000년 1월~2월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교육행정9급, 전산9급, 사서9급, 보건9급, 식품위생9급, 시설(건축)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전기)9급【일반모집】, 시설관리9급, 조리9급, 운전9급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가) 2017.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 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나) 2017.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1) 공개경쟁임용시험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전산9급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기 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공업(일반전기) 9급	· 기 능 장【전기】 · 기　　사【전기】 · 산업기사【전기】
공업(일반전기) 9급 【특성화고】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시설(건축) 9급 【특성화고】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시설관리 9급	· 기 능 장【전기】 · 기　　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조경】 · 기 능 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조리 9급	· 기 능 장【조리】 · 산업기사【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기 능 사【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운전 9급	·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

※ 유의사항

가) 공업(일반전기)·시설(건축)【특성화고】

-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 이어야 함
  (※ 2017.1.1. 현재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반드시 확인**

나) 운전

- **면접시험일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이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7.3.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② 최근 3년간(2014.3.8.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최근 3년간(2014.3.8.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7. 4. 3.(월) 09:00 ~ 4. 7.(금) 18:00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우편접수불가),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4.(금)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① **주민 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③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서식4」 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경력)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5」 사용,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첨부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17. 3. 7.) 이전 경력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⑥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간 : 2014. 3. 8.~ 원서접수기간 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별도 안내

다)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대상직렬 : 시설관리·조리·운전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 **응시 희망자는 2017. 4. 3.(월) ~ 4. 7.(금)까지 보훈(지)청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에서 제시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참고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청주보훈지청(☎043-299-6222)으로 문의

  ※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4.(금)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 **추천과 별도로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도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 불가)

마. 기타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전산직렬**, **사서직렬**에 응시하는 자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전기)직렬-일반모집**, **시설관리직렬**, **조리직렬**,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교육행정직렬만 해당)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장애인과 일반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3】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 구분 모집(교육행정직렬만 해당)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 가능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 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 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

4. 전출제한

가.「지방공무원법」제35조제2항,「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타 시· 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음**

5.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

구 분	출제기관	대 상 과 목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 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 수

※ 위탁출제과목 시험문제 및 정답은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필기시험	2017.5.30.(화)	2017.6.17.(토)	2017.7.14.(금)
면접시험	2017.7.14.(금)	2017.8.3.(목)	2017.8.8.(화)

※ 시험장소,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시험성적 조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7.7.14. ~ 7.18.),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7.8.8. ~ 8.10.)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7. 4. 22.(토) 09:00 ~ 2017. 4. 24.(월)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 폭주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 바람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본인 **휴대전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확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7. 6. 1.(목)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 부여**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7.6.1. 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다만, 가산특전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음

8)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중복접수 및 기타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람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5%,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하며,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반영 가능
-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분 야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점 비 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변호사	5%
시설(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보건(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5%
	기 능 사 : 식품가공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3%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점 비 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신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작성(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임**
- 가산특전 대상자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

3) 위의 '공통 적용 가산점' 과 '직렬 적용 가산점' 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개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4)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허위로 가산점을 작성(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1)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 이상인 경우

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적용 방법

1)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함

2)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 함

(단, 교육행정직렬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 함

※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이 6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다. 제3차 시험(면접)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직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면접성적 불량자는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불합격 처리됨

라.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목표제 적용 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으며, 응시결격 및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됨

마.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 접수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시험지 배부 시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사.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7. 6. 1.(목) 10:00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 출력이 가능함. 단, 사전에 출력을 못하였거나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가능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차.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함

12. 기타사항

가. 시험 관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름

나. 공고문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탑재

다.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장애인 편의 지원,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 2515)으로 문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에 별도 공고합니다.

【붙임 1】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제4항

라. 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2. 선발예정인원 : 공업(일반전기) 1명, 시설(건축) 1명

3. 선발 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제1차·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직렬(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내용
공업(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과목별 100점 만점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 1택형 ○시험시간 : 60분(10:00~11:00)
시설(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과목별 100점 만점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 1택형 ○시험시간 : 60분(10:00~11:00)

○ 출제수준 : 기술직(일반직)9급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 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4. 응시자격

가.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은 18세(1999.12.31.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2017학년도 고교 3학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0.1~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기회 부여

5. 추천기준

선발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충청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가. 추천자격 요건

1) 아래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졸업예정자는 2017학년도 3학년 재학자에 한함

나) 임용예정직렬 및 전공학과 대비표

시 험 명	임용예정 직렬(직류)·계급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의 직무분야별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2) 위 해당학과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전학년(졸업예정자는 1~2학년)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학과 관련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나)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점수계산 방법 】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3)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

가) 2017.1.1. 기준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

나) 생활기록부에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학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합격한 자가 대학 재학・휴학・졸업(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2018년 2월 졸업예정인 합격자가 해당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실시하지 아니함

나. 추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추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6. 추천인원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 전원

7. 관련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17. 4. 3.(월) ~ 2017. 4. 7.(금) 09:00~18:00

나.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아래의 제출서류를 받아 접수 기간 내에 방문 접수(개인별 제출 불가)

다. 제 출 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라.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1부 **(서식 1)**
○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식 2)**
○ 생활기록부(소속 학과의 석차비율 및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성적증명) 사본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서 1부 **(서식 3)**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4.(금)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바. 문의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43-290-2513)

8. 응시원서 접수

가.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나.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

다. 접수방법 :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의 **7.응시원서 접수** 참조

※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당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9. 기타사항

○ 추천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됨
○ 응시원서 미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추천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 제공
○ 졸업예정자가 합격한 경우 졸업 이후(2018년 3월 이후) 임용 예정

<서식1>

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 현황표

☐ **학교명 :** ○○ 고등학교 (직인)

☐ **응시직렬(직류) : 공업(일반전기)**

☐ **추천대상자 현황**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공(학과)	졸업일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
1	*홍길동*	*1997.11.11*	*남*	*전기과*	*2017.2.20*	*충북지방경기대회*	*금상*	*2016.1.10*
2								

※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첨부

○ **성적우수자**

순	성명 (생년월일)	전공학과	성적*				성별	졸업 (예정)일
1	*홍길동* *(1998.11.11)*	*전기과*	성취평가제미적용	평균석차비율		*10%*	*남*	*2017.2.20*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전문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성취도 A 비율			
2	*홍길동* *(1998.11.11)*	*전기과*	성취평가제미적용	평균석차비율			*남*	*2017.2.20*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3.0*		
					평균석차비율	*10%*		
				전문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		
					성취도 A 비율	*80%*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 **추천인원 및 담당자 현황**

직렬(직류)	학교 내 지원자수	최종 추천자수	추천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공업(일반전기)						

<서식2>

특성화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서

직렬(직류)	공업(일반전기)

<table>
<tr><td rowspan="5">인적사항</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4">(한자:)</td><td rowspan="5">사 진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것)</td></tr>
<tr><td colspan="2">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학력사항</td><td colspan="2">출신학교(현소속학교)</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학교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학과(정원)</td><td colspan="4">학과(정원 명)</td></tr>
<tr><td colspan="2">졸업연월</td><td colspan="4">년 월(졸업, 졸업예정)</td></tr>
<tr><td rowspan="3">학업성적</td><td>성취평가제 미적용</td><td colspan="2">석차비율</td><td colspan="4">상위 %(등/ 명)</td></tr>
<tr><td rowspan="2">성취평가제 적용</td><td>보통교과</td><td>평균 석차등급</td><td></td><td>평균석차비율</td><td colspan="2">상위 %(등/ 명)</td></tr>
<tr><td>전문교과</td><td>성취도 평균B이상</td><td>해 당 ( )
미해당 ( )</td><td>성취도 A 과목 비율</td><td colspan="2">%</td></tr>
<tr><td>소지자격증</td><td colspan="3"></td><td>기능경기대회입상내역</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주소 및 연 락 처</td><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휴 대 폰</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전자우편</td><td colspan="4"></td></tr>
</table>

위 사람은「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선발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평균석차 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3.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

□ 담당 교사 연락처 : 부서 성명 연락처

<서식3>

각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 재학·휴학·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4>

「9급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구분 : 일반인,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대형버스]운전경력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승차 인원	상근 및 비상근여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응시대상은 대형버스만 가능 (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 승차인원 : 대형버스는 36인승 이상으로 운행하였던 버스의 인승 기재 (<예> 45인승, 38인승 등)
※ 상근이란? 주5일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상단의 구분란 〔일반인,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에 ○ 하세요.

<서식5>

〔구분 : 일반인,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9급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대형버스 운전원 근무사실 확인서

❍ 성명(한글/한자) :

❍ 주민 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인은 본 기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운전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확인자	직위(급)	
	성 명	(인)
	연락처	

○○기관장 (직인)

※상단의 구분란 〔**일반인,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에 ○ 하세요.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관련)

○ **(조정점수)**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조정점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조정점수} = \left\{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50$$

※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과락기준)** 원점수와 조정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사회: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 **(가산점 부여시기)** 원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와 조정점수(원점수의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원점수 채점
조정점수 산출
⇩
원점수 가산점 부여 ⇨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40점 이상인 경우
⇩
최종 조정점수 산출 ⇨ 「원점수+가산점」의 조정점 산출
⇩
총득점 산출 ⇨ 5과목 총득점으로 합격여부 판정
(공통과목+선택과목조정점수)

【붙임 3】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 대상시험 :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 지원대상

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나.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3.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시각장애	○시각장애(1~6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1.5배 연장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경우에만 시간연장 가능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각장애 6급은 의사진단서 1부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중증뇌병변장애 (1~3급) ○중증상지지체장애 (1~3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시험시간 연장 : 1.5배 연장 ○ 대필(선택형시험)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경증뇌병변장애 (4~6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 시험시간 연장 : 1.5배 연장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경증상지지체장애 (4~6급)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하지지체장애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 증명서 1부
청 각 장 애	○청각장애(2~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기 타 장 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시험시간 연장 불가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시간에 포함)	○ 의사소견서 1부

4. 편의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나. 구비서류 : 〈서식 6~11〉「편의지원 신청서」 참조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1)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자[2017.04.2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2) 우편접수 시 교육청 인사담당으로 전화 요망

라. 접 수 처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1) 우편번호 : 28635

2)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번지

마. 문의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7)

5. 편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대상 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항목을 확인

나. 의사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

다.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에는 ①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소견)서를 따름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4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소견서'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마. 확대답안지는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종료 후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OMR답안지에 이기

바. 대필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종료 후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OMR답안지에 이기

사.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 시 별도로 신청 · 접수

<서식6>

편의지원 신청서[시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시각장애 (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지참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7>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상지지체 장애 1~3급]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 )급 상지지체장애 (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대필(선택형시험)		
	보조공학기기 지참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8>

편의지원 신청서 [뇌병변·상지지체 장애 4~6급]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 )급 상지지체장애 ( )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시험시간 연장 ※경증뇌병변장애인만 해당		

첨부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9>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지체 장애(휠체어 이용자)]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지체 장애	별도 시험실 배정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10>

편의지원 신청서[청각 장애 2~6급]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청각장애 ( )급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11>

편의지원 신청서 [기타 장애 및 임신부]

○ 응시직렬 :

○ 성 명 : (H·P : , ☎)

○ 주민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6월 17일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 '○')	편의지원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